

#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1,561,761	9,946,853
일반회계	246,831,659	7,404,950
특별회계	84,730,102	2,541,903
공기업특별회계	7,681,145	230,434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681,145	230,434
기타특별회계	77,048,957	2,311,4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79,241	149,3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4,489	17,235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57,229	31,71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0,045,484	1,201,36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488,445	224,65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262,246	277,867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200,546	66,01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010,347	330,310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08,467	12,254
기반시설특별회계	22,463	6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생 략"

제 5 조 "생 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45,09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